

공보 제3159호

화순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2023년 5월 8일(월)

발행: 화순군 / 편집: 기획감사실 홍보팀

누리집: <http://www.hwasun.go.kr>

차 례

◆ 공 고

화순군 공고 제2023-704호	화순군 도시재생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
화순군 공고 제2023-705호	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화순군 공고 제2023-709호	불법 주·정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화순군 공고 제2023 - 704호

「화순군 도시재생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. 5. 8.

화 순 군 수



화순군 도시재생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기존 상인 및 주민과 청년 등 신규사업자 등에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정의, 군수의 책무, 적용범위 (안 제1조~제4조)

나. 상생협력상가 공급 기준 (안 제5조)

- 청년 창업자, 사회적 경제조직,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우선 공급

다. 상생협력상가 운영 기준 (안 제6조)

- 사용허가 대상 규정 : 소상공인, 청년 창업자, 사회적 기업 등
(청소년유해업소,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외)

-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, 최대 10년까지 갱신 가능

- 임대료는 대부료 요율 범위에서 주변시세의 80% 이하로 정함

라. 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(안 제7조 ~ 제10조)

- 위원회 구성

· 위원수 : 15명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 호선)

· 위 원 : 당연직(도시재생 업무 관련 공무원), 위촉직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. 05. 30.(22일간)까지 화순군수(참조: 도시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인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일반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yeu2na@korea.kr

2) 주소(일반우편) : (우)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

도시과 도시재생팀

3) 팩스 : 061-379-3850

4. 그 밖의 사항

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도시과 도시재생팀(☎ 061-379-3637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화순군 도시재생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

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

입법예고 명	화순군 도시재생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			
의견 제출자	성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	
	주소			
의견내용				
화순군 도시재생 상생협력상가 운영 및 공급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. 년 월 일 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 화 순 군 수 귀하				

붙임

조례안

화순군 조례 제 호

화순군 도시재생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민과 상인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상생협력상가의 공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상생협력”이란 임대인(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)과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.

가. 상가건물 및 상점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

나. 지역상권의 쾌적한 환경 조성

다. 지역상권의 특성을 살린 시설 정비 및 확충

라. 그 밖에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. “상생협력상가”란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화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, 공기업, 출자·출연기관 등 공공이 공적재원을 투입해 조성 또는 소유하여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을 말한다.

3. “지역상권”이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

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도·소매업소, 제조·판매업소,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군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.

4. “출자·출연 기관”이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화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 등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저렴한 상생협력상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상생협력상가 공급을 위해 군, 지방공기업, 출자·출연 기관, 임차인협의회, 임대인협의회 등 관계 기관·단체와 협력 및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상생협력상가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5조(상생협력상가 공급 기준) 군수는 상생협력상가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.

1. 청년 창업자, 사회적 경제 조직,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

2. 주변 상권과 상생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입주 업종 선정

제6조(상생협력상가 운영 기준) ① 군수는 상생협력상가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사용허가할 때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상생협력상가 사용허가 대상에서 배제한다.

1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
2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
3.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
4.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
5. 그 밖에 군수가 상생협력상가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실 또는 사업장

② 상생협력상가의 사용허가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 다만, 군은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할 수 있다.

③ 상생협력상가의 임대료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과 「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대부료 요율 범위에서 주변시세(감정가)의 80퍼센트 이하로 정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인 상생협력상가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라 공급 및 운영해야 한다.

제7조(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군수는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상생협력상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상생협력상가 입주자 선정, 임대료율 및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
2. 입점 업체·업소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

3. 분쟁 조정 및 자문, 시설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군수가 상생협력상가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상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상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1. 도시재생 업무 등 관련 공무원(당연직)

2. 화순군 도시재생사업으로 설립 인가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원

3.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주민협의체 등 직능단체 대표 및 주민

4. 도시재생 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

5.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

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고, 이 경우 간사와 서기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.

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 고

관련법령

□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제27조의2(상생협약)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,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고,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화순군 공고 제2023 - 705호

「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. 5. 8.

화 순 군 수



**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

1. 제안이유

- 가. 도시재생 시설물의 위탁 및 주민단체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화순군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
- 나.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항 신설 (안 제6조의 2)
 -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의 기준 및 대상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0조

의2에 따른 정비

나.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 등에 관한 조항 신설 (안 제8조의 2)

- 주민협의체에서 출발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생을 위한 수익원 확보 지원 및 시설물 위탁 관리 대상 규정

다.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임기에 관한 조항 변경 (안 제14조)

- 임기 2년 및 1회 한정 연임을 임기 1년 및 필요시 연임으로 변경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. 05. 30.(22일간)까지 화순군수(참조: 도시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인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일반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yeu2na@korea.kr

2) 주소(일반우편) : (우)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

도시과 도시재생팀

3) 팩스 : 061-379-3850

4. 그 밖의 사항

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도시과 도시재생팀(☎ 061-379-3637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

입법예고 명	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	
의견 제출자	성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	
	주소			
의견내용				
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. 년 월 일 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 화 순 군 수 귀하				

붙임

조례안

화순군 조례 제 호

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5호 본문 전체를 “협동조합, 마을기업, 마을카페,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”로 변경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) ①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“공익 목적의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.

1.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
2. 주민의 건강, 안전,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

3. 교육, 안전, 복지, 의료, 환경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

4.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활동

5.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화순군 도시재생지원센터

2.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협의체

3. 도시재생으로 설립인가 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

제2장 “주민협의체”를 “주민협의체 등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 등) ① 군수는 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(이하 “협동조합”이라 한다)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1.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 사업

2. 「화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계망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

창출

3.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행사 운영

4. 마을관리

5. 도시재생시설물 운영 및 관리

6. 재생사업구역 내 공용주차장 운영 및 관리

7. 그 밖에 재생사업구역 내 화순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 등

제9조 중 제1항의 본문 중 “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”를 “법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제3항 본문 전체를 “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.”로 변경한다.

제17조 중 “「화순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8조 중 제1항제1호 “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법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9조 중 제1항과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.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, 기존 제3항의 본문 중 “군계획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,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에서 위임된-----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, <u>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-----.</u>
제6조 (공동이용시설)-----	제6조 (공동이용시설)-----
5. <u>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</u> <u><신 설></u>	5. <u>협동조합, 마을기업, 마을카페,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</u>
<u><신 설></u>	6. <u>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</u>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2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) ①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0조의2에 따</u>

라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“공익 목적의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.

1.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
2. 주민의 건강, 안전,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
3. 교육, 안전, 복지, 의료, 환경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
4.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활동
5.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

제2장 주민협의체

<신 설>

하는 활동

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
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
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은 다
음 각 호와 같다.

1. 화순군 도시재생지원센터
2.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
민협의체
3. 도시재생으로 설립인가 된
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

제2장 주민협의체 등

제8조의2(마을관리 사회적협동
조합 설립지원 등)① 군수는 재
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
도록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
조제3호에 따른 마을관리 사회
적협동조합(이하 “협동조합”이
라 한다)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
를 위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
할 수 있다.

제9조 (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
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수행하게
할 수 있다.

1.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
등 마을 유지관리 사업

2. 「화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
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
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과
관계망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
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

3.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
등 행사 운영

4. 마을관리

5. 도시재생시설물 운영 및 관
리

6. 재생사업구역 내 공용주차장
운영 및 관리

7. 그 밖에 재생사업구역 내 화
순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
등

제9조 (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

등)①군수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순군 도시재생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14조 (센터의 구성)-----

③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,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1회에 한정하여 연임 을 할 수 있다.

제17조(지원금액의 환수) 군수 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 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 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「지 방재정법」 및 「화순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 른다.

제18조(상생협약 체결 권장) ① 군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--

등)①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른 -----

--.

제14조 (센터의 구성)-----

③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 며,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 다.

제17조(지원금액의 환수) ---

----- 「화순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-----
-----.

제18조(상생협약 체결 권장) ① 군수는 -----

-----권장할 수 있다.

1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
2. 기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-----.

제19조(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)①영 제39조제1항-----

1. 기반시설-----
2. 문화유산-----

②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「주차장법 시행령」-----.

③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라-----관련된 사항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-----.

-----.

1.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
2.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-----.

제19조(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) 현행 제1항 및 제1항제1호, 제2호 삭제

①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「주차장법 시행령」-----.

②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라-----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-----.

참 고

관련법령

▣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시행 2022. 6. 10.)

제30조의2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22.>

1. 도시재생활성화지역

2.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

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,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▣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(시행 2022. 11. 15.)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▣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시행 2023. 1. 1.)

제13조(사용허가의 방법) <생략>

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8. 4., 2013. 6. 21., 2014. 7. 7., 2015. 7. 20., 2016. 7. 12., 2018. 1. 9., 2018. 12. 4., 2020. 12. 22., 2022. 4. 20., 2022. 6. 28.>

<생략>

8.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·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

<생략>

21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

22.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

가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

나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

다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

라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

<생략>

제17조(사용료의 감면) <생략>

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“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0. 12. 22., 2022. 2. 18., 2022. 4. 20.>

1.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

2. 제13조제3항제21호·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

<생략>

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8. 4., 2015. 7. 20., 2018. 12. 4., 2020. 12. 22.>

1.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사용료의 100분의 30

2.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: 사용료의 100분의 50

<생략>

화순군 공고 제2023 - 709호

불법 주·정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, 주소(거소)불명, 이사, 수취인불명,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3. 5. 8.

화 순 군 수



1. 공 고 대 상 : 주·정차 금지 위반 대상자 명단 등 : 별첨
2. 공 고 기 한(의견제출기한) : 2023. 5. 8. ~ 2023. 6. 2.(25일)
3. 의 건 제 출 처 :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
(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/ ☎061-379-3785)
4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(전자문서포함), 구두진술(증명 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)
5. 기타 안내
 - **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0%** 감경 되므로,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 -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%가 감경됩니다. 다만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 감경 되지 않으며, 법령상 감경이 여러가지인 경우라도 사전 통지서에 의한 의견진술기간 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.

- 1) 「국민 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
- 2)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
- 3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4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1급~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- 5) 미성년자

※ 의견 제시 기한 내 자진 납부코자 하는 경우와 기타 의문 난 사항은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(☎ 061-379-3788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불법 주정차 사전통지서 반송이력 1부.